○○○○○○○고 학생 사망 사건 관련 손해배상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대법원
사건번호	2020다○○○○○○ [3심]	사건유형	손해배상(기)
원 고	□□□ 외 2명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2명
판결선고일	[3심]2020. 9. 24. 심리불속행기각	비 고	[1심]2019. 5. 27. 원고패 [2심]2020. 5. 22. 원고일부승
사건개요	❍ 2018. 4. 27. ○○○○○○○고 시험시간 부정행위 적발 학생 투신 사망 사건 발생 ❍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으로, - 교실감독교사 ◎◎◎와 복도감독교사 ●●●는 감독관으로서의 직무해태 책임, - 학교장 ▲▲▲은 학교장으로서 지휘·감독상의 직무해태 및 주의의무위반, 시설물 관리 소홀 책임, -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 제기.		
주 문	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2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		
이 유	❍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
2심 판결요약	❍ 학업성적관리지침 규정은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, 투명성, 부정행위 방지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고, 시험시간 또한 교육시간에 해당하므로 시험 중 학생의 무단이탈을 막고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위 규정의 취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. 따라서 망인이 퇴실한 시간이 수업시간이 아니라 고사 시간이었고 망인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망인의 퇴실이 시험의 공정성, 투명성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실한 망인에 대한 교사들이 보호 · 감독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음. ❍ 피고 ◎◎◎와 ●●●는 학생인 망인을 보호·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, 피고 ▲▲▲은 학교장으로서 지휘·감독상의 직무 해태 및 주의의무 위반하였고,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. ❍ 인천광역시(교육청)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피고들의 교육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. * 단, 피고 ◎◎◎, ●●●, ▲▲▲의 행위를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, 즉 중과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여 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음.		
2심 결론	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, 원고들의 피고 ◎◎◎, ●●●, ▲▲▲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		